

## 애인에게 들은 주식 정보...맘대로 활용했다간 죄고랑

[김변의 돈되는 법]

매경프리미엄이 김대식 변호사가 쓰는 '김변(金辯)의 돈 되는 법'을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증권 불공정거래 전문 대응팀' 소속입니다. 그는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도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거래구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검찰 고발 및 기소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은 돈 되는 경제금융 법률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는 자사주 2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입사원 B는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커피 심부름 중 우연히 목격하고,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A사 주식을 취득했다.

그리고 애인 사이인 동료 직원 C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C도 A사 주식 1억원가량을 샀다. C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D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D는 A사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A사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취득한 B·C·D 3명 모두를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있을까?

미공개 중요 정보는 상장법인 업무와 관련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공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결국 어떤 정보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정보공개 전후 주가 흐름과 거래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주식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는 자사주 30억원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추어볼 때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얘기다.

또한 주식 등의 대량 취득 처분(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관련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시 미공개 중요 정보 유형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에 추가됐다. 자사주 20만주가 당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주식 등 대량 취득 처분과 관련된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수령해 이용한 사람은 1차 정보수령자로 처벌받지만,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정보를 수령해 이용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부자는 B이고, 1차 정보수령자가 C이기 때문에 B와 C는 처벌될 수 있지만 D는 2차 정보수령자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내부자거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차 정보 수령자인 C가 2차 정보 수령자인 D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설사 C가 A회사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에게 A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